

디지털포용법 추진경과 및 주요내용

(‘26.2.9, NIA)

□ 추진 경과

- 국민의힘 5대 분야 패키지 법안(「디지털포용법」) 포함(5.31)
- 고동진 의원(국민의힘 108명 공동) 「디지털포용법」 발의(6.28)
 - ※ 과방위 검토(8.26), 제418회 국회(정기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9.3)
-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 11명, 조국혁신당 1명 공동) 「디지털포용 증진법」 발의(8.13)
- 과방위 전원 참석한 인공지능과 디지털포용 관련 법률안 공청회* 개최(9.24)
 - * (진술인) 한양대 신민수 교수, KAIST 최문정 교수
- 김장겸 의원(국민의힘 10명 공동) 「디지털포용법」 발의(9.26)
- 과방위(‘24.11.26) 및 법사위(‘24.12.17) 심사
- 국회 본회의 의결(‘24.12.26) / 공포(‘25.1.21) / 시행(‘26.1.22)

□ 법안개요

- (목적) 디지털포용 증진과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
- (구성) 6장 37조

□ 주요내용

① 법률의 목적 및 정의 (제1조, 제2조)

- ‘디지털포용’ 증진 및 관련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며, ‘디지털포용*’, ‘디지털취약계층’ 등 주요 정책개념·용어 정의

*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경제, 사회,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

② 디지털 대체수단 (제4조)

- 디지털을 이용하지 않고도 불편함 없이 서비스와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의 대체수단 제공 노력 규정

③ 디지털포용 기본·시행 계획의 수립 (제8조, 제9조)

- 과기정통부장관은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포용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3년), 시행계획(매년) 수립하여 추진함

④ 디지털포용 실태조사의 실시 (제11조)

- 과기정통부장관은 정보격차, 디지털역량, 접근성보장 등 디지털포용 정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

⑤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의 실시 (제12조)

- 디지털 차별·소외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제품·서비스에 대한 영향평가 실시

< 디지털포용 영향평가 평가유형 >

구분	자체 영향평가	개별 영향평가
평가 주체	▪ 국가기관등의 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관계 국가기관등의 장과 협의 필요
평가 대상	▪ 국가기관 등에서 신규 도입·개발·구축하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 디지털포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 전문기관(과기부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책 및 사업 등(ex. 전체 이용자 규모와 특성 등)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
평가 방법	<u>소관기관 담당자가 자가점검 수행</u> ※ 전문기관(과기부 등)은 검토컨설팅 지원	<u>전문기관(혹은 전문위원회 등) 심층 분석·평가</u> 후 개선방안 제언

⑥ 디지털 역량센터의 지정 등 (제15조, 제16조)

- 국가기관등은 국민의 디지털역량 함양을 지원하며, 과기정통부장관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역별 디지털역량센터*를 지정할 수 있음
 - * 전국민을 대상 스마트폰·AI 등 보편적 디지털 교육을 제공, 지자체와 연계하여 전국 각지 상시 운영
- 디지털역량센터 지원을 위한 디지털역량지원센터를 지정·운영 및 역량교육을 위한 표준교재 개발·보급

⑦ 지능정보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성 보장 (제19조 ~ 제23조)

- 디지털 접근성* 품질 검·인증(과기정통부) 시행 및 국가·공공기관 등의 접근성 보장 지능정보제품의 우선구매 지원
 - * (예시) 키오스크 접근성 : 시각장애인에 대한 음성안내 기능 및 이어폰 단자, 노약자를 위한 글자크기 확대 기능 제공 등
- 취약계층의 이용편의 보장을 위해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설치·운영자에 대한 접근성 확보 의무화* 및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 *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 사항 이관
- 실효성 있는 키오스크 접근성 정책 추진을 위해 의무 부담자로서 키오스크 제조·임대자를 추가로 규정하고 시정명령·과태료 대상에 포함

⑧ 디지털포용 산업 육성을 위한 표준화·수출지원 등 (제26조-제30조)

- 과기정통부장관은 디지털포용 기술 표준화를 지원하고, 기술개발 및 해외수출,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 기반을 조성함
- 산업 분류체계 정립* 및 유망 디지털포용기술** 지정
 - * (예) (現) 생산물·서비스 유형 등으로 분류 → (改) 디지털포용이라는 '목표 혹은 가치' 중심으로 분류
 - ** (예) 신체·인지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 AI를 활용한 키오스크 등

⑨ 포상 (제33조)

-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고 공공부문 내 디지털포용성의 확산을 위해 디지털포용 증진에 기여한 기관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

참고1 디지털포용법 개정 추진 현황

◆ 「디지털포용법」(‘25.1.21 공포, ‘26.1.22 시행)의 효과적 이행과 실행 기반 강화를 위해 발의된 개정 법률안(6건) 추진

① 디지털 침해사고 대응 관련 개정안 (4건)

- **(목적)** 이동통신사 해킹 사고*를 계기로 디지털 취약 계층의 침해 사고 예방·대응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립
* SK텔레콤 홈 가입자 서버(HSS) 해킹으로 가입자 2,300만 명 정보 유출(‘25.4.18)
- **(경과)**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 소위(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의결(‘25.11.24)로 「디지털포용법안」 대안반영 폐기
- **(주요내용)** ①정부가 취약 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②침해사고 전담 센터 지정, ③교육·상담을 통한 대응 역량 제고 등

② 디지털역량 함양 기반 마련 관련 개정안 (1건)

- **(목적)**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포용성·형평성을 강화하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책임 있게 디지털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확립
- **(경과)** 허영 의원실(더불어민주당 10인 참여, ‘25.7.28.)
- **(주요내용)** ①디지털 역량 정의에 ‘윤리’ 포함, ②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지원, ③디지털역량을 확인·평가할 수 있는 진단시스템 구축

③ 디지털취약계층 접근성 보장 관련 개정안 (1건)

- **(목적)**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지능정보서비스 이용 시 어려움 증가에 따라 접근성 보장 의무를 국가기관 등 뿐만 아니라 민간으로 확대
- **(경과)** 최보운 의원실(국민의힘 12인 참여, ‘25.12.4.)
- **(주요내용)**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성 보장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능정보서비스 관련 개인·법인·기관 및 단체로 의무 부과 확대

< 참고 : 디지털포용법 신설 조항 > (노란색은 의결된 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일	제안자	지역구	신설 조항
2210681	‘25.6.9.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갑	제25조의2(침해사고 대응 지원) 신설
2210939	‘25.6.19.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갑	제8조(디지털포용기본계획)제3항제5호에 디지털 침해사고 발생 시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제25조의2(침해사고 대응 지원) 신설
2211592	‘25.7.21.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제8조(디지털포용기본계획)제3항제4호 제4호의2 디지털 침해사고 발생 시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제18조의2(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 지원) 신설
2211773	‘25.7.28.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원춘천 철원화천군 양구군갑	제2조(정의) 디지털역량 정의에 ‘윤리’ 추가 제14조(디지털역량 함양 활동) 내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신설 제17조의2(디지털역량 진단시스템의 구축·운영) 신설
2212290	‘25.8.21.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을	제8조(디지털포용기본계획)제2의2 디지털취약계층에 대한 사이버 범죄 피해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제8조의2(디지털취약계층에 대한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 신설
2214800	‘25.12.3.	최보운 의원 (국민의힘)	비례	제19조(지능정보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성 보장) 지능정보서비스 관련 개인·법인·기관 및 단체 포함